광주지방고용노동청전주지청 공고 제2026-136호

실업급여 부정수급액 반환명령 처분 사전 통지 공시송달 공고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수급한 고용보험법 위반자에게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서 포함)를 등기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26. 11. 23.

광주지방고용노동청전주지청장 광주지방고용노동청전주지청장인

1. 건　　명: 실업급여 부정수급 반환명령 처분사전통지
2. 근　　거: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3. 대상 및 내용: 붙임(공시송달 명단 참조), 공고기간 내에 의견제출이 없는 경우 고용보험법 제61조, 제62조에 따라 실업급여 반환명령 처분
4. 공 고 기 간: 2026. 11. 23. ~ 2026. 12. 7. (15일간)
5. 의견제출안내: 대상자가 공고기간 내에 의견 제출을 하고자 하는 경우 광주지방고용노동청전주지청 고용관리과 부정수급조사팀(전북 전주시 덕진구 태진로 114, 3층)에 방문하거나 구술 또는 우편·FAX(0503-8803-0599)를 이용해 서면으로 의견제출하시기 바랍니다.
6. 문　　의: 광주지방고용노동청전주지청 이해인 수사관(전화 063-270-9231)

【붙임】

실업급여 부정수급 반환명령 처분사전통지 공시송달 명단

(공고기간: 2026. 11. 23. ~ 2026. 12. 7.)

연번	성명 (생년월일)	주소	서류의 명칭	서류 주요내용	송달불능사유
1	김 * (811026)	전북 전주시 완산구 (이하 생략)	처분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	실업급여 수급 중 근로사실 미신고 부정수급액 등 총 반환명령액: **1,514,480원**	폐문부재

2026. 11. 23.

광주지방고용노동청전주지청장 광주지방고용노동청전주지청장인